

보도 일시	2021. 12. 1.(수) 10:00	배포 일시	2021. 12. 1.(수) 09:00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책임자	과 장 김길용 (044-204-3401)
		담당자	사무관 최일암 (044-204-3422)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12.1.부터 12.15.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이하 ‘법인 일반세율 특례’라고 함).
 -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16.부터 9.30.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1.부터 12.15.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동봉된 안내문 참조
-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제출은 홈택스(손택스)와 우편·팩스로도 가능

□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www.hometax.go.kr 《공동인증》신고/납부 《일반신고》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 우편·팩스 신청 시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 홈택스 《세무서식(우측하단)》종합부동산세법

□ 국세청은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 고 1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서식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신청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2. 일반세율 적용 법인 구분(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 ⑦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3. 일반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고시일자 기재, 호수 기재)

⑩ 공공주택 사업자 (⑤ 선택 시)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공기관 [] ㉡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 [] ㉢ 주택도시기금 또는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⑪ 공익법인등 (⑥ 선택 시)	[]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 학교·유치원 등 교육사업 []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
⑫ 주택조합 (⑦ 선택 시)	[] ㉨ 지역주택조합 [] ㉩ 직장주택조합 [] ㉪ 리모델링주택조합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년 월 일)
⑬ 사업시행자 (⑧ 선택 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년 월 일)
⑭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⑨ 선택 시)	[]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중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 임대주택 호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인)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⑤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⑥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⑦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⑧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⑨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참 고 2

홈택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방법

※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신청 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납부

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세금포인트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Step 1. 일반신고

Step 2. 제출내역

- [STEP 1]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곳에 체크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16.~9.3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한 번 제출하면 수정 및 삭제는 불가능하며, 해당 신청기간 내 여러 번 신청을 하는 경우 최종 신청된 내용만 정당하게 신청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증 및 신청요약정보는 [Step 2.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③

(9월)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증빙서류제출

- 첨부서류는 신청서 제출 후 [step2.제출내역]에서 조회 후 증빙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재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도 재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세금포인트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Step 1. 일반신고

Step 2. 제출내역

01. 기본정보 입력

02. 일반세율적용 신청

03. 신청서 제출

04. 종료

미리보기

기본정보 입력

납세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408 - 81 - ●●●●

조회

법인명

전화번호

이메일

직접입력

기본주소

주소검색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건물명(아파트,상가)

동

호

④

저장 후 다음이동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택스 안내

세무서 안내

통합실치 프로그램

자료실

공지사항

고객센터

세무서식

- 5 -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Step 1. 일반신고

Step 2. 제출내역

01. 기본정보 입력

02. 일반세율적용 신청

03. 신청서 제출

04. 종료

미리보기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일반세율 적용 법인 구분(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한개만 선택**)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 ☐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일반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고시일자 기재, 호수 기재)

- ⑥ ☒ 공익법인등 (선택 시)**
 -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헌저히 기여하는 사업
 - ☐ 학교·유치원 등 교육사업
 -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
- ☐ 공공주택 사업자 (선택 시)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동등기관
 - ☐ 등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
 - ☐ 주택도시보증 또는 등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 주택조합 (선택 시)
 - ☐ 지역주택조합
 - ☐ 직장주택조합
 - ☐ 리모델링주택조합
 -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
- ☐ 사업시행자 (선택 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사업계획승인 고시일
- ☐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선택 시)
 -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중 분할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 ☐ 임대주택 호수

이전

수속하기

다음미동

신고/납부

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Step 1. 일반신고

Step 2. 제출내역

01. 기본정보 입력

02. 일반세율적용 신청

03. 신청서 제출

04. 종료

미리보기

신청서제출_신청서 출력

- 신청서를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 신청내용이 적절한 경우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 '미리보기'의 '일괄출력'버튼으로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는 신청서 제출 후 [step2. 제출내역 조회]에서 조회 후 증빙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가능합니다.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내역 요약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	
과세년월	2021-06	제출년월	2021-11

⑦

이전

신청서 제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텍스 안내

세무서 안내

통합설치 프로그램

자료실

공지사항

고객센터

세무서식